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9	제 정 일 자	2018.10.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2026.02.01 (4)	쪽 번 호	1 / 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 장 총칙	제 2 조 정의	■ 용어 정의 1. "대학·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u>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시행 2026. 2. 1]</u>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2.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31> 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 1 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 3 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연구실안전관리사"란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란 <개정: 2023. 10. 31>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 장애 1 급부터 9 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 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 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 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 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 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 13 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14.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9	제 정 일 자	2018.10.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2026.02.01 (4)	쪽 번 호	2 / 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3 조 적용범위 등 시행령 2 조 [별표 1]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 법의 전부/일부를 적용 제외 가능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1.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 : 법의 전부를 적용 제외 2. 기업부설연구소		<table><tr><th>대상 연구실</th><th>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th></tr><tr><td>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td><td>법제 10 조 (연구실환경안전관리자의지정) 법제 20 조 3 항 및 4 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td></tr><tr><td>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td><td>법 제 10 조, 제 20 조제 3 항, 4 항. 다만,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연구 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td></tr></table>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법제 10 조 (연구실환경안전관리자의지정) 법제 20 조 3 항 및 4 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법 제 10 조, 제 20 조제 3 항, 4 항. 다만,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연구 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는 연구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법제 10 조 (연구실환경안전관리자의지정) 법제 20 조 3 항 및 4 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법 제 10 조, 제 20 조제 3 항, 4 항. 다만,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연구 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table><tr><th>대상 연구실</th><th>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th></tr><tr><td>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 조(안전관리자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td><td>법 제 10 조</td></tr><tr><td>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24 조(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적용 받는 연구실</td><td>법 제 11 조</td></tr><tr><td>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5 조(안전보건관 리규정의 작성 등), 제 26 조(안전보건관 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 27 조(안 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td><td>법 제 12 조</td></tr><tr><td>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안전·보건교 육)를 적용 받는 연구실</td><td>법 제 20 조</td></tr><tr><td>마.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위험성평가) 를 적용 받는 연구실로서 연구개발활동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td><td>법 제 19 조</td></tr><tr><td>바. 「산업안전보건법」 제 47 조(안전·보건진 단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td><td>법 제 14 조, 15 조</td></tr><tr><td>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 조부터 제 131 조까지의 (건강진단)를 적용 받는 연구실</td><td>법 제 21 조</td></tr></table>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 조(안전관리자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0 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24 조(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1 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5 조(안전보건관 리규정의 작성 등), 제 26 조(안전보건관 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 27 조(안 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2 조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안전·보건교 육)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20 조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위험성평가) 를 적용 받는 연구실로서 연구개발활동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법 제 19 조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 47 조(안전·보건진 단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4 조, 15 조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 조부터 제 131 조까지의 (건강진단)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21 조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 조(안전관리자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0 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24 조(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1 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5 조(안전보건관 리규정의 작성 등), 제 26 조(안전보건관 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 27 조(안 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2 조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안전·보건교 육)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20 조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위험성평가) 를 적용 받는 연구실로서 연구개발활동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법 제 19 조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 47 조(안전·보건진 단 등)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14 조, 15 조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 조부터 제 131 조까지의 (건강진단)를 적용 받는 연구실	법 제 21 조																			
제 2 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 무	법 5 조①②③④	연구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개정 2021. 8. 10.>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 제하기 위하여 노력. -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 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 -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	- 연구실책임자 지정서																
	연구실책임자 지정.운영	법 9 조①②③④ 영 7 조 규칙 3 조	-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요건 모두 갖추자를 연구실책임자로 지정 1.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2.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 연구실책임자 임무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가능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 독려 가. 실험복 /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 기타 보호구	- 연구실책임자 지정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9	제 정 일 자	2018.10.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2026.02.01 (4)	쪽 번 호	3 / 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본 조성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법 10 조 영 8 조, 규칙 4 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 34 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분교/분원에 별도로 지정) 다만, “분교/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 명 미만인 경우는 지정 제외 1) 연구활동종사자 1 천명 미만 : 1 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 1 천명~3 천명 미만 : 2 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 3 천명 이상 : 3 명 이상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무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12 조 1 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자 준용 □ 자체지정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체지정(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 □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법 11 조①②③④⑤ 규칙 5 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협의사항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통합 운영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별도로 설치운영									
제 3 장 연구실 안전조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법 12 조 ①,②,③ 규칙 6 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운영 및 준수		■ 기존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활용, 운영 및 준수 □ 연구실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작성 운영 및 준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법 13 조, 영 9 조 고시 제 2019-89 호, 2019. 10. 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점검 지침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고시 제 2019-89 호, 2019. 10. 23)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안전점검의 실시	법 14 조 영 10 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 제 28 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제 13 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r><td>구분</td><td>점검방법</td></tr><tr><td>1.일상점검</td><td>■ 연구실일상점검표 활용 1 회/일 점검 실시</td></tr><tr><td>2.정기점검</td><td>□ 자체 점검표 작성 1 회/년 점검 실시 ■ 안전점검대행기관에 위탁 점검 실시(1 회/년)</td></tr><tr><td>3.특별안전점검</td><td>■ 연구주체장이 필요한 다고 판단 시 안전점검대행기관에 위탁 점검 실시</td></tr></table>			구분	점검방법	1.일상점검	■ 연구실일상점검표 활용 1 회/일 점검 실시	2.정기점검	□ 자체 점검표 작성 1 회/년 점검 실시 ■ 안전점검대행기관에 위탁 점검 실시(1 회/년)	3.특별안전점검
구분	점검방법													
1.일상점검	■ 연구실일상점검표 활용 1 회/일 점검 실시													
2.정기점검	□ 자체 점검표 작성 1 회/년 점검 실시 ■ 안전점검대행기관에 위탁 점검 실시(1 회/년)													
3.특별안전점검	■ 연구주체장이 필요한 다고 판단 시 안전점검대행기관에 위탁 점검 실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9	제 정 일 자	2018.10.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2026.02.01 (4)	쪽 번 호	4 / 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 일상점검 : 매일 1 회 실시(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정기점검 : 매년 1 회 이상 실시(위탁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안전점검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위탁점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중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 점검표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2, 3] 참조		
	안전진단의 실시	법 15 조 영 11 조 규칙 7 조	- 정밀안전진단 실시(1 회/2 년) ▪진단시기 1. 안전점검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으로 판정 시 2.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3. 10. 31>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해당 없음 □ 자체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대행기관에 위탁 안전진단 실시 *점검표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4]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		
제 3 장 연구실 안전조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법 16 조 ①	-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공표		해당 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공표 실시		
		법 16 조 ② 영 13 조	-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음의 중대한 결함(연구활동중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 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결함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결함 발생 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9	제 정 일 자	2018.10.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2026.02.01 (4)	쪽 번 호	5 / 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법 19 조①,② 영 15 조①,②,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제 2019-90 호, 2019. 10. 23., 일부개정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 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 안전위험성평가 절차서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 2 에 따른 위험성평가서로 대치			
	교육,훈련 등	법 20 조①②③④⑤ 영 16 조 규칙 10 조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1. 신규 교육훈련 : 8 시간(채용 후 6 개월 이내) 2. 정기 교육훈련 : 6 시간/반기 3. 특별안전 교육훈련 : 2 시간 * 상세내용 : 맨 뒤장 [별표 3] 참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훈련 실시 1. 신규교육 : 18 시간 이상(지정 후 6 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12 시간 이상(1 회/2 년)	-교육훈련 절차서(기존 절차서 활용) - 교육훈련보고서 - 교육훈련 수료증			
	건강검진	법 21 조①②③④⑤ 규칙 11,12 조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 필요에 따른 임시 건강검진 실시	-기존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활용 1)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2)기타 법에서 규정한 규정준수			
제 4 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중대연구실 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법 23 조 규칙 14 조	①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3 일 이상의 치료 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 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③제 1 항/2 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 연구기관 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표	- 연구실사고조사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9	제 정 일 자	2018.10.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2026.02.01 (4)	쪽 번 호	6 / 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연구실 사용 제한 등	법 25 조	-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 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 실시 1. 정밀안전진단 실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9	제 정 일 자	2018.10.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2026.02.01 (4)	쪽 번 호	7 / 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교육시기)	교육내용
1. 신규 교육·훈련	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유해화학물질/유해인자/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사람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 교육·훈련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가. 영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연구실

② 법 제 15 조 제 2 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104 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